

大韓民國平成十一年度一般會計決算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查報告書

1998年 12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回附豫算

가.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 審查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당초 : 1998년 11월 21일 평창군수
- 수정 : 1998년 12월 14일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당초 : 1998년 11월 25일
- 수정 : 1998년 12월 14일

다. 상정일자

- 당초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 12. 8 상정)
- 수정 : 제7차 " (1998. 12. 15 상정)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 12. 18 의결)

3.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신대송)

가. 제안이유

-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군 의회의 심의, 확정을 받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은

-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15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8%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762백만원, 특별회계가 7,395만원임

- 세입예산중

- . 일반회계가 지방세 9,628백만원, 세외수입 12,080백만원, 지방교부세 28,756백만원, 지방양여금 7,63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7,663백만원이며
- .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06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329 백만원, 지방채 1,000백만원임.

- 세출예산은

- . 일반회계에 경상예산 26,104백만원, 사업예산 45,920백만원 채무상환 733백만원, 예비비등 3,005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경상예산 365백만원, 사업예산 5,041백만원, 채무상환 1,932백만원, 예비비등 57백만원임.

4.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전문위원 허해성)

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31억 5,7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9억 9,194만원대비 16.8%인 168억 3,41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75억 7,051만원이 감소한 757억 6,207만원이
-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억 3,638만원이 증가한 73억 9,574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부분

-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대비 18.8%가 감소한 757억 6,207만원으로 이는 세원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 총규모는 96억 2,76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9%인 3억 9,10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세외수입은 120억 8,086만원으로 전년대비 16.8%인 24억 4,625만원이 감소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총 287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가 감소된 금액임
- 지방양여금은 총 76억 3,443만원으로 전년대비 1.6%가 감소하였음.

-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총 124억 2,07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7억 2,473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대비 24.3%가 감소한 52억 4,228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 출 부 분

- 일반행정비는 의회운영과 기획관리, 선거관리 등에 182억 2,125만원이 계상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9.8%가 감소한 금액임
-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사업등에 226억 7,68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6.8%가 증가된 예산임.
-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등에 329억 8,602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대비 31.3%인 150억 8,043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민방위비에는 3억 3,784만원으로 전년대비 74.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비보조사업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설치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대비 57.6%가 감소한 15억 4,013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 7억 3,315만원, 제지출금 3,000만원, 예비비 7억 7,69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5. 質疑 및 答辨要旨

질의요지	답변요지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억원이 세입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 각종 미등록이나 기간내 미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임.
2.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회의개최 보상비와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 99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무원만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안나오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할려고 예산을 수립하였음
3.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전립출연금 2억 원에 대하여?	○ 고등교육법에 보면 교육재정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 보조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강원대학교 총장과 강원도지사가 '97년도에 협약한 사항이며 18개 시군중 평창군만 출연하지 않았음.
4. 군이미지 통합사업과 해피700상표 등록 추가출원 용역은 기대효과는?	○ 현행 지방자치 시대는 경쟁사회로서 시군마다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이에 맞추어 글자모양이든가, 시각디자인 등을 통합하여 문화행사라던가 체육행사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답변요지
5.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 부족한 예산이 없는지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인력보강을 할 계획은 없는지?	○ 부족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족 인력에 대하여는 차후 대책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6. 농어촌손실 보상금 2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근거는?	○ 매년 3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하며 버스회사에서는 4억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군의 재정여건 고려와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50%에 미달 되게 지급하고 있음.
7. 일숙직 수당에 있어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 전국적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인상에는 어려움이 있음
8. 한마음연수참석 예산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 지난 10월 본청 및 읍면 전직원이 참석했던 정신교육으로 호응이 좋아 1박 2일로 계획하였음
9. 가정방문 노인급식비에 대하여?	○ 98년부터 일일노인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거동불능자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차량으로 모시고 와서 진찰하고 있는데 진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중식을 지급했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임.

질의요지	답변요지
10. 체육회 사무국장의 현재 업무는 무엇 인지와 인력감축등을 위하여 일용직도 채용 안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한 의향은 ?	○ 체육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도민체육대회 등위부상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보며, 채용에 대하여는 재검토할 예정임
12. '98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4,000만원은 정산이 되는지 ?	○ 정산이 되었음
13.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개최지는 어디 인지와 장평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장평에서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	○ 평창읍 종합운동장, 장평우시장, 진부고수부지, 감자축제부지 중 적의지를 택하여 개최할 계획임.
14. 1998년도 치어방류는 어디에 실시하였는지와 차후 사업계획을 확대 할 의향은 없는지	○ 방림면 천제당, 진부면 배텃거리, 봉평면 흥정천, 용평면 청개동천, 도암면 차항천에 방류하였으며, 도비보조 지원시 확대할 계획임.
15. 경제림 사업장 선정기준과 수간주사 가 읍면마다 형평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솔잎혹파리나 산화피해목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식재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지원등에 어려움이 있음.
16. 국토이용계획 도면 지번부여에 대하여	○ 학술용역비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리군만 도면에서 제작된 부분만 가지고 발급하고 있고 준농림, 농림

질의요지	답변요지
17. 하수관거 시설설치 내역은?	<p>에 대한 착오발급으로 민원의 재산 피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작업임.</p> <p>○ 신규사업과 기존시설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임.</p>

6. 討論要旨

- 가. 일부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한 원칙이나 근거없이 답습위주, 추측위주의 예산편성은 많은 예산이 투자될 때 투자되지 못하는 주 원인이 되는 바, 예산편성시 정확한 원칙과 근거에 의해 편성
- 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많은 신규사업 예산이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은 수정예산의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초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됨.
- 다. 정해진 시간내에 신속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보충자료 제출이 충분하여야 함에도 예년에 절반가량도 안되는 제출과 일부부서의 미제출 사례는 예산심의를 위한 집행부 협조가 부족했다고 봄.

7. 修正案要旨

가. 수정이유

-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국가재정악화로 인한 전례없는 국도비감소와 세입격감등의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 복지증진사업에 불요불급하거나, 불명확사업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삭감 조정.

나. 수정주요골자

- 세입중 세외수입의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
취득세 8억 7,593만 4천원, 정기예탁금이자 3억 원,
도비보조금의 하수종말처리장 3억 5,700만원을 감액
의결하고
- 세출중 일반행정비 1억 8,200만원, 사회개발비 5억 7,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는 대도시 직판장유통시설확장 1억 원등
9개사업에 7억 7,193만 4천원을 삭감하였음.

8. 審查結果

- 일반회계 :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 의결
- 특별회계 : 원안의결

9. 少數意見의要旨

- 가. 꼭 필요한 시책이라면 사전에 조례등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없이 예산편성
- 나. 송정택지는 지방채 30억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현재 4억 5,600만원의 원금과 이자가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데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은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건
집행부의 추진의지 부족이며, 잔여물량도 주차난등으로
인하여 매각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이 없음.

- 다. 주민 직접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생활민원처리반에 대한 식비 등의 지원이 미흡한 면이 있음.
- 라. 대부분 국고보조로 추진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와 수간주사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는등 산림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망됨.
- 마. 봉평 무이·면온등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하고도 몇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시되지 않아 무절제한 개발을 허용토록 방치하는 것은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부족했다고 봄.
- 바.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재검토가 요망됨.
- 사. 예산을 투자한 산초나무 재배사업이 관리가 되지않아 사업 효과가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재투자를 위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건 사업에 대한 철저한 효과분석이 있어야 할 것임.
- 아.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감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체육회 민간인 사무국장을 채용을 위한 인건비 편성은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행위로서 재검토가 요망됨.
- 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노인복지회관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 검토

차.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정액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는데 성과분석을 통하여 실적율에 따라 보조하는 방안 검토

10. 基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

첨부 :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

1. 예산총칙 수정

○ 제1조

(단위: 천원)

회계명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
계	83,157,816	83,157,816	-
일반회계	75,762,072	75,762,072	-
특별회계	7,395,744	7,395,711	

○ 제2조 ~ 7조 : 변동사항 없음

2. 예산수정의결 내역

가. 세입총괄

(단위: 천원)

회계별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계	83,157,816	-	-	83,157,816	
일반회계	75,762,072	-	-	75,762,072	
특별회계	7,395,744	-	-	7,395,744	

나. 세출총괄

(단위: 천 원)

회계별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계	83,157,816	697,380	697,380	83,157,816	
일반회계	75,762,072	697,380	697,380	75,762,072	
특별회계	7,395,744			7,395,744	

○ 일반회계 세출

과 목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계			83,157,816	697,380	697,380	83,157,816	
1000 일반행정비			18,221,253	289,536	1,200	17,932,922	
1200 일반행정비			17,694,876	289,536	1,200	17,406,540	
	1210 기획관리		10,707,251	270,000		10,437,251	
		1211 기획관리	365,150	270,000		95,150	○ 21C 학술자문위원회 연구용역 △30,000 ○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 출연금 △240,000
	1220 공보관리		353,643	19,536		334,107	
		1221 공보관리	353,643	19,536		334,107	○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19,536
	1240 내무행정		4,931,059		1,200	4,932,259	
		1245 일선행정 조직운영	552,755		1,200	553,955	○ 면개발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1,200

과 목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 사유 및 내역		
관	항	세항		감 액	증 액				
2000 사회개발비			22,676,805	130,009		22,546,796			
2100 교육 및 문화비			5,458,347	130,009		5,328,338			
2110 문화예술			4,226,356	10,000		4,216,356			
	2111 문화진흥		3,696,527	10,000		3,686,527	○ 팔석정안내표지판설치 △ 10,000		
2120 체육청소년			1,231,991	120,009		1,111,982			
	2121 체육진흥		1,182,681	120,009		1,062,672	○ 직장체육부(레슬링) 운영 △ 77,313 ○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 17,696 ○ 도민체육대회 출전 △ 15,000 ○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 10,000		
3000 경제개발비			32,986,024	277,835		32,848,024			
3100 농수산개발비			14,249,056	142,500		14,111,056			
3110 농정관리			12,781,562	47,500		12,738,562			
	3114 유통특작		691,340	47,500		648,340	○ 대도시직판장시설장비 지원(경축포장기) △ 7,000 ○ 수출용화훼운송료지원 △ 16,000 ○ 평창강냉이 가공기계설치 △ 20,000 ○ 평창강냉이 생산과정 특허 및 상품권출원 △ 4,500		
3120 축수산진흥			487,391	95,000		392,391			
	3121 축산행정		487,391	95,000		392,391	○ HAPPY 700 평창한우 홍보입간판 △ 30,000 ○ 원예·축산농가고리맺기 지원 △ 21,000 ○ 가축질병차단시설 △ 24,000 ○ 축산물 대도시판매점 연결고리 맺기 △ 20,000		

과 목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관	항	세항		감 액	증 액		
3200 지역경제개발비			1,049,306	110,000		939,306	
3230 관광관리			524,948	110,000		414,948	
	3231 관광관리		486,315	110,000		376,315	○관광안내 및 군정홍보 ARS설치 △20,000 ○관광홍보영상물제작 △ 90,000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17,305,116	25,335	696,180	17,279,781	
3310 산림자원개발			6,157,392	25,335		6,132,057	
	2121 산림보호		2,067,224	25,335		2,041,889	○산불유급감시원인건비 △25,335
3330 건설관리			9,163,668		696,180	9,859,848	
	3333 농어촌도로 확포장		2,470,176		696,180	3,166,356	○농촌마을도로포장사업 696,180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안 번호	44
----------	----

제출년월일 : '98. 12. 14.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변경통보에 따른 조정과 재원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작성 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3,15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6%인 4,40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9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1,718백만원, 지방양여금 214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26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98백만원, 도비보조금 1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156백만원, 사업예산 6,37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 718백만원, 예비비등 1,62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21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